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 
보호·상담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·상담 지원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 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·상담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임미연 의원 등 12명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검토기간: 2023. 11. 6.(월) ~ 11. 10.(금)

### 2. 제정이유

-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보호·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,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의 보호 및 상담 지원 관련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마.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,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·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, 일시보호,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과 주거 및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살펴보면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‘정인이 사건’ 이후 2021년 3월 “아동학대 살해죄”를 신설하여 생후 2년 이하의 영아를 포함한 18세 미만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, 경제적·심리적·사회적 강박<sup>1)</sup>에 따른 영아살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,
-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출생미등록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2,12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249명이 사망하였고,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도 601명에 이르며,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 처리된 아동도 45명에 달하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- 또한 저출산 극복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과제가 된 상황에서 위기 상황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기되거나 사망하는 영아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며,
- 한부모가족과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임부(妊婦)만 지원하는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,

---

1) 지난 5년간 발생한 영아살해 및 유기사건의 판결문 58건을 분석한 MBC 탐사기획팀(‘스트레이트’, 7월 16일 방영)에 따르면 ‘경제적 이유(39%)’, ‘출산 사실이 주위와 가족에 알려질까봐 (29%)’가 가장 큰 범행 이유로 나타났다.

- 더불어 2024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서도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시책 강구를 명시하고 있어 해당 법령의 시행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.
-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<생략>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 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지 아니하다.

1. <생략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    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    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    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    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    마.~차.<생략>

3-7. <생략>

## □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(2024. 7. 19. 시행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제5조의2(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)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

②·③ <생략>

## □ 「모자보건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2.~12. <생략>